

반론보도로 원상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인격권에 대한 경미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Karlsruhe 고등법원 1992. 12. 8. 자 판결

-3U 37/ 92 사건 -

적용법조

독일민법 제 823 조

판결요지

1. 언론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물질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행사 요건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언론인으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에 반함이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행해지게 된 경우에는, 언론의 이와 같은 행동은 정당한 이익의 수호를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3. 언론의 보도가, 어떠한 관청이 직무상 언론기관에 통보해준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고, 특히 이것이 경찰의 공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라면, 언론기관으로서 그 경찰의 통보내용이 신뢰할만하고 또한 포괄적이어서 더 이상 즉시 그 내용의 진실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원칙적으로는 존재 하지 아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개요

양을 치는 사람인 원고는, 「BJ 신문을 발행하는 피고 출판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고 있다.

1991. 9. 3. 「EJ 라는 길가던 통행인이 일반의 양떼-이 양들은 후에 원고의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다-를 발견하였는 바, 이 양들은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완전히 건조된 사육장 내에 감금되어 있었고, 그들 중의 몇 마리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다. 그는 즉시 이를 I 경찰서 지소에 통고하였다. 그 후 개시된 경찰 및 수의사에 의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2 마리의 양을 안락사 시키게 됨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출판사의 FBJ 편집부는 1991. 9.4. 자로 경찰청의 언론담당부서가 보내준 텔리팩스 뉴스를 접수하였는 바, 위 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양들이 목말라 죽기 직전에 구조되었다. M: E 경찰서 지소의 공무원들이 화요일 저녁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결과 끔찍한 사실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M 에 있는 양의 사육장에서 위 공무원들은 450 마리의 양을 발견하였는 바, 이 양들은 마실 물도 전혀 없이 그곳에 수용되어있었다. 땅 바닥은 완전히 건조한 상태이었고, 몇 마리의 양은 완전히 수척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 중 2 마리는 거의 죽은 상태에서 꼼짝하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누워 있었다. 공무원들은 즉시 수의사를 불러왔는데, 그 수의사는 양 한 마리를 안락사 시킬 수밖에 없었다. 자원봉사자 소방수인 B 는 위 동물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을 끌어와야만 했었다. 위 양치기는 당연히 고발 당할 것을 예상하여야만 하였다.」

나아가 위 편집부는 E 경찰서 지소로부터 몇 가지의 정보를 더 얻었다. B 신문의 편집인은 관할 I 경찰서 지소에 전화를 하여, R 씨의 진술 및 이와 일치하는 K 경찰청의 언론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후 즉시 B 신문에는 『잔혹한 동물학대, 450 마리의 양들이 목이 말라 울부짖다』라는 제목으로 어떤 기사가 보도되었다.

쌍방의 당사자들은 본질적으로는 위 보도의 정확성 및 그 보도의 결과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원고는 특히, 위 양들이 결코 목마른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최소한 5만 마르크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고 또한 물질적 손해의 배상도 역시 청구하고 있다.

판결이유

1. 원고는 피고 출판사에 그의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다.

a) 독일연방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는 그의 인격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당 재판부 역시 위 판례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가 다른 방법으로는 만족스럽게 전보될 수 없는 경우라야만 하는 것이다. 즉 인격권에 경미한 침해만이 있는 경우에는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인격권의 중대한 침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무엇보다도, 침해행위의 중요성 및 사정거리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으로서, 그 공표의 범위의 정도, 피해자의 이익이나 명성의 훼손되는 기간 및 그 지속성의 정도, 나아가 가해자의 행동의 원인이나 동기 및 가해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다(BGHZ 95, 212m.w.N. 참조).

b) 그런데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1심 법원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요건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경찰서로부터의 통고의 내용은 피고가 정확히 옳기고 있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어떤 통행자가 양 우리에서 불상한 상태에 있는 양들을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 통행인과 경찰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양들은 매우 목이 마른 상태에 있었고, 그러고 위 땅바닥이 완전히 건조되어 있는 점과 비추어 보아 오랜 기간 동안 물을 공급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졌다. 2 마리의 양은 바닥에 거의 죽은 상태로 누워있었다. 경찰관은 수의사를 불러왔는 바, 위 수의사는 양 한 마리를 안락사 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소방서도 역시 위 사실을 통고 받고 위 동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어야만 했었다. 양치기는 위 양떼 주변에는 없었다. 양치기가 통고 받고 위 양떼들에 도착한 때에 그가 술을 마신 상태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위 양치기에 대하여는 고발이 제기되었다.

위 고발에 기하여 후에 수사가 진행되었는 바, 형사사범에 관하여는 수사가 중단되었으나, 질서위반사범에 관하여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1991. 9. 3. B에 있던 양떼들의

관리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즉, 원고는 하루 종일 동안 양떼들을 돌보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의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양 2 마리가 그들의 병과 관련이 있는 현저한 고통을 대책 없이 감수하여야만 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양들의 발굽을 제대로 손질해 주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양들에게는 피할 수 있었던 고통이 가해지게 되었다. 더욱이 어린양들은, 항문부분에 명백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배설물로 더럽혀져 있어서 기생충에 감염되어있었고, 그리고 이로 인한 철저한 구충조치도 행해지지 아니하여 양들은 고통을 당하여야만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동물보호법 제 2 조 i 호, 및, 제 18 조 제 1 항 제 1 호에 위배하여 질서범죄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원고소유의 위 양떼들의 비참한 상태의 원인이 원래 생각되었던 것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 후에 밝혀지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이는 위 진술의 핵심부분에서는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로써 원고의 인격권의 현저한 침해로는 되지 아니 한다.

위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B 신문의 1991. 9. 5. 자에 보도된 내용이, 위 고발인 E 가 진술한 내용뿐만 아니라, 나아가 연락을 받고 온 경찰관 및 최초로 현장에 도착한 수의사 D 박사의 확인내용과 일치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즉 5 경찰관이 메모해 둔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위 양들의 상태가 지극히 나빴던 것의 원인에 대하여 경찰관으로서는 이를 확인할 수가 없었고, 그렇지만 수분의 부족으로 인한 양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명백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의사인 D 박사는 그 원인규명을 위임 받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D 박사는 양떼들이 분명히 수분부족의 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동물학대의 상태는 현존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위와 같은 조치가 있는 이후에 추가로 조사를 의뢰 받은 국립 수의사단체 의 수의사 B 박사는 1991. 10. 21. 자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B 박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양들은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아래에서도 특별한 고통을 받거나 또는 갈증의 문제에 빠짐이 없이, 새로이 물을 공급 받지 아니하더라도 적어도 48 시간은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동시에 위 B 박사는, 양들이 위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양들이 규칙적으로 매일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양치기가 유념해 왔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반론보도문의 공표의 방법에 의해서 원상회복을 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원고가 「위자료」의 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만약에 원고가 언론 법에 규정된 반박보도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다.

결국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권은, 인격권의 침해로 인한 물질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는 이유(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2.6 참조)와 마찬가지로, 이유로써,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2. a) 원고가 물질적인 손해의 배상의무에 관하여 지금까지는 순수하게 확인의 소송을 구하여오다가 일부분을 이행의 소송으로 바꾸는 것은 2 심의 단계에서도 독일민소 법 제 264 조 제 2 호에 따라서 역시 허용되는 것이다(BGH, W 1975,827 참조).

b) 그러나 물질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그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수 없다.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가 있는 경우에 그 보도가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이외에 따로 이 바로 중지청구권 및 취소청구권이 발생될 수 있음에 반하여(Löffler/Riecker, Handbuch des Presserechts 2. Aufl., 42. Kap., Rd.-Nr.26 m.w.N. 참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그 문제점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정당한 이익의 수호라고 하는 정당화 사유(위법성 조각사유)도 역시 존재하지 아니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정신적 또는 물질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인격권 침해행위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및 책임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를 준수한 경우에는 이로써 이미 위법성의 문제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위법성의 문제와 고의·과실의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다. 고의 또는 과실도 언론기관에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저촉됨이 없이, 언론기관의 보도내용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모습으로 된 경우에는, 그 언론기관의 행위는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익의 수호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화 사유(위법성 조각사유)로도 되는 것이다(Löffler/Riecker a.a.O. 42. Kap., Rd.-Nr.70 m.w.N.) 그리고 나아가 그 손해가 책임 있는(즉 고의·과실 있는) 인격권 침해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위법하고, 책임 있는 인격권 침해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언론기관 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모두 준수하였기 때문이다.

기사의 편집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절대적으로 진실이라는 것을 담보할 의무가 언론기관에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언론기관의 입장으로서는 어떠한 소문의 진위에 관하여 언론기관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그 소문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바로 그 소문의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BGH, NJW 1987, 22225, zur Pressemäßigen Sorgfalt 참조). 언론기관이 다른 기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어떠한 뉴스가 어떤 관청의 언론기관에 대한 공적인 통보에 기초한 경우, 특히, 경찰의 공표사실에 기초한 경우에는, 언론기관의 입장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그 국가기관의 인식이 신뢰할 만한 것이고, 또한 포괄적인 것이어서, 더 이상 즉각적으로 그 사실의 허위 여부를 조사할 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Dam /kuhner, Widerruf, Unterlassung und Schadensersatz in Presse und Rundfunk, Rd.-Nr. 216 m.w.N.)

B 신문의 담당편집인이 위 사건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경찰로부터 입수한 것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최초의 정보는 K 경찰서 지소의 언론담당부서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위 지소는 고소인 겸 증인 R 및 경찰서 지소 I로부터 나머지의 정보를 입수한 것이었다. 위 기사에는 역시, 원고는 고발이 제기될 것을 예상하였음에 틀림없다. 즉 위 고발을 기초로 하여 비로소 수사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 있다.

이로써 이미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들이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히 되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손해와 관련된 인과관계의 유무에 관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더 들어가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다툼 및 원고의 목축금지를 발생시킨 일련의 다른 사정들이 존재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원래는

원고는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였어야 할 것이었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점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본건 사건의 결과여하에 따라서는 더 이상의 손해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더 이상의 목축금지 내지는 경제적인 침해의 유무에 관하여는, 원래 논리적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만이 중요한 것이고(위 확인은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 절차에서 행해진 바 있다) 물질적 및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권에 대한 법률적인 요건의 존재여부의 문제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이다.

3. 나머지의 정신적 및 물질적 손해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적법하기는 하지만 위 1, 2 항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는 것이다.